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397호

건설신기술 지정(2617)

‘단면강성이 보강된 빔을 이용한 저형고 부재로 구성되는 장지간 가설교량 및 그 시공방법(TSB공법)’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7월 31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(1)	법인명(성명)	(주)스틸코리아		
	주 소	우06028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04, 707호(보암빌딩)		
	전화번호	02-587-8080	팩스번호	02-587-8181
신청인(2)	법인명(성명)	와이비이앤시(주)		
	주 소	우57948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81(조례동)		
	전화번호	070-8888-2817	팩스번호	061-723-2817

2. 신기술의 개요

- 지정번호 : 제999호
- 명 칭 : 단면강성이 보강된 빔을 이용한 저형고 부재로 구성되는 장지간 가설교량 및 그 시공방법(TSB공법)
- 기술분야 : 토목 > 교량 > 가설시설물
- 신기술의 내용
이 신기술은 주거터의 플랜지 인접부(Web)에 L형강 보강재를 볼트로 접합하여 형고의 증감 없는 장지간화 시공이 가능하고 부재의 용접량 감소 및 열변형을 감소시키며 지간에 따른 보강방법 표준화로 자재 재활용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장지간·저형고 가설교량 공법(TSB공법)이다.
- 신기술의 범위
구조용(주거터) 부재인 H빔의 휨 압축이 발생하는 플랜지 인접부(Web)에 L형강 보강재를 볼트접합으로 부분 보강한 가설교량 시공방법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- 가. 보호기간 : 고시일로부터 8년
- 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 -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 -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 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신기술품셈

- 해당 없음

5. 기 타

-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·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